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우리군 백수읍 구수리 산3-1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,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3년 12월 28일(목)까지 영광군 해양수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12. 14.

영 광 군



1. 공 고 기 간 : 2023. 12. 14. ~ 2023. 12. 28.(15일간)

2. 공 고 방 법 : 영광군 홈페이지

3. 제거대상선박 : 1척(붙임 참고)

4. 제거처리일시 : 공고기간 만료 이후

5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
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아울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선박 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제거 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및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영광군 해양수산과(☎ 061-350-5144)로 연락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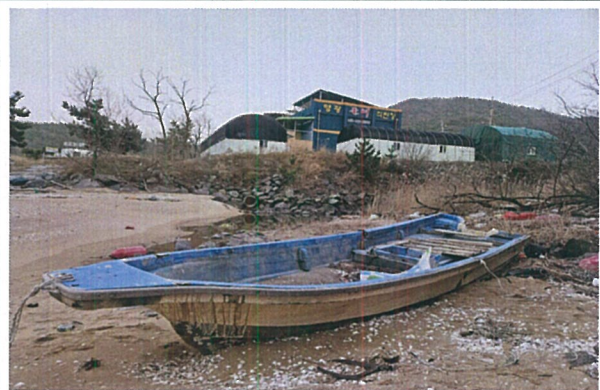
영광군 공고 제2023-1240호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발견장소	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산3-1임			
선박 제원	선명(명칭)	미상	선박(어선)번호	미상
	선적항	미상	톤수	2톤미만 추정
	주요치수	미상		
관리청	영광군청		관리번호	제2023-01호
제거 예정일자	2023년 12월 28일 이후			
제거 방법	직권 제거			
공매장소 및 일시	해당 없음			
입찰보증금	해당 없음			



방치선박 위치



방치선박 전경 사진

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2월 28일(목)까지 영광군청 해양관리팀(061-350-5144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14일

영광군



(담당 : 영광군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, 전화번호 : 061-350-5144)